



: 2020-11-25

서울고등법원

제 3 행정부

판 결

사 건 2020누35235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이충선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제 1 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선고 2019구합6951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4.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159,497,472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3년간의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및 원고 B, C에게 한 각 3년간의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2019. 5. 14.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2차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통보는 이 사건 1차 통보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호,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



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원, 납부기한 2019. 3. 17.'인 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원, 납부기한 2019. 6. 14.'로 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3. 이 사건 2차 통보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피고의 평가에 의한 종합평가점수는 44.75점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표상 보통(60점)과 미흡(40)의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로, 미흡(40점)과 불량(20점) 사이를 초과하므로 불량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2차 통보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연구개발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당시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불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기준에 근거하여 불성실 수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원고들은 공인인증기관에 해당하는 H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들은 연구개발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여 비록 과제의 일부에 실패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3년의 참여제한처분, 정부출연금 전액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2차 통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



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말하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등 참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527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3, 7, 8, 17, 20 내지 23,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제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정도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2차 통보의 근거인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개발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문언은 피고에게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판단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불확정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고, 평가표의 점수 급간의 명칭일 뿐인 '불량'과 이 사건 2차 통보의 근거법령의 문언인 '극히 불량'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환경조건 중 '습도', '진동' 항목을 '불합격'하였고, '고도', '열충격' 항목을 '미실시'하였으며, 전자기적 적합 중 '전도 노이즈' 항목을 '불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후 최종평가 결과 통보에서 '목표 미달 11개 항목 중 5개 미달되어 있으며, 전자기 적합성이 합격되지 못하면 다른 성능시험도 진행불가하여 현 상태로 기술개발 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최종평가 보류내용들이 소명되지 않아 실패로 판정함'이라고 통보하였다. 위와 같이 기술개발 목표의 여러 항목에 대하여 원고들이 시험을 미실시하거나 불합격한 이상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한 피고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제의 결과에 대한 '실패' 판정 이후에 별도로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검증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이에 관한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입증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고 그 밖의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연구결과에 대하여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에서 곧바로 연구개발 과정까지 불성실하다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최종평가 과정에서 보류판정 이후 실패판정 및 성실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주관기관 보완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술개발과정의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기존에 지적된 정량적 평가 목표(환경 및 전자파 관련)를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및 관련된 공인성적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결과를 반복할 만한 사안은 아님
- 귀책사유는 주관기관이 실패내용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음(문제점에 대해 1년간의 보완할 시간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음)
- 최초 기술개발기간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 평가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능지표에 대한 기술개발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4) 원고들은 이 사건 과제의 '실패' 판정 이후 성실성 검증단계에서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문제항목을 보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실패' 판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후 제1심 소송 진행 중 전도시험 발주서, 전자차폐망 발주서, 노이즈필터 발주서, 각 전도 노이즈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자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도시험 발주서, 전자차폐망 발주서, 노이즈필터 발주서의 경우 발주서에 불과하고, 각 전도 노이즈 시험성적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어떤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확인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 사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은 공인인증기관인 H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불성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H가 공인인증기관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들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시험성적서상 확인되는 여러 항목의 미시행 및 불합격을 원인으로 불성실 판단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2019. 4. 30. 개최되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성실수행으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2차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제11조 제2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서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은 2017. 8. 21. 종료되었는바, 위 협약 제11조의 변경된 규정 자동적용 조항 또한 어디까지나 협약의 일부이므로, 협약이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마찬가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협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그에 적용되는 규정이 사후적으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의 성실수행 여부 대한 판단에는 이 사건 협약이 종료된 2017. 8. 21. 당시 시행되었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통보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가진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표에 의하면 평가위원 6명 모두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패' 평가를 내렸고 종합의견으로는 '최종평가 보류내용들이 소명되지 않아 실패로 판정함', '각 차수별 기술개발 내용 불명확과 목표미달 요인의 분석에 대해서는 자료 미제시로 개선되지 않았음', '목표 미달 11개 항목 중 5개 미달되어 있으며, 전자기 적합성이 합격되지 못하면 다른 성능시험도 진행불가하여 현 상태로 기술개발 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귀책대상은 주관기관에 있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서에 의하면 6명의 평가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 평가를 내렸고, 종합의견으로는 '성실성 입증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과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지표 중 기존에 미달성, 미진행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가 미흡함', '최종평가 과정에서 보류판정 이후 실패판정 및 성실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주관기관 보완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술개발과정의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 '귀책사유는 주관기관이 실패내용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음(문제점에 대해 1년간의 보완할 시간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음)', '최초 기술개발기간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 평가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능지표에 대한 기술개발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과학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 평가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에 그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재량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설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2차 통보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들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 회사에게 교부된 정부출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정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부터 유래한 정부지원금을 받은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연구에 실패한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환수하고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가가 한정된 국가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헌법 제123조 제3항)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과제의 수행 경과, 이 사건 과제에 따른 결과물의 성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불성실 실패로 결정된 것에는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부출연금 제도의 방만한 운영 및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 2차 통보와 같은 사후적 조치가 엄격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3)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출연금이 환수되더라도 위 출연금으로 원고 회사가 구입한 연구기자재 및 기술개발 성과물 등은 여전히 원고 회사의 소유로 남게 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들인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2차 통보는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 및 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특히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그 과정 또한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그 출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그 출연금을 전액 환수하고 3년간 참여제한처분을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2020-11-25

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이수영

 판사 백승엽



[별지]

관계 법령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1의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⑥ 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6.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2.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3.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관련)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 법조문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호)

제24조(최종보고)

-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턴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 기술개발결과 중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5조(최종평가)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 "성실수행", "실패", "보류"로 구분하며, 판단기준 아래 각호와 같다.
 1. 성공: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성실수행: 기술개발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실패: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
 4. 보류: 성공, 성실수행 또는 실패 판정을 위한 근거 자료 부족으로 재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제30조(제재 등)

-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제39조(이의신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과제선정평가 결과
2.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평가 결과
3. 제26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4. 제29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5.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근거조문: 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46조)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17. 3. 6. 시행된 것)

다)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아래 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구분		
	우수	보통	불량
①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 도면, 공인시험성적서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개발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외부자문, 컨설팅, 연구방법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가?			
④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자체 노력을 통한 성과(특허, 논문, 매출 등)가 나타났는가?			



: 2020-11-25

라)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개 지표이상 우수 판정시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패로 판정한다. 다만 ①, ②번 항목의 경우 어느 하나라도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실패로 판정한다. 끝.